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 (제 회)	

문화유산위원회 규정
전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문화유산위원회 규정 전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국가유산 관련 개별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문화유산위원회, 자연유산위원회 및 무형유산위원회를 각각 폐지하는 대신 국가유산청 소속으로 국가유산위원회를 설치하여 통합 운영하는 내용의 「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4506호, 2025. 11. 24. 정부 제출)이 논의 중임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국가유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제3조, 제8조)

- 국가유산위원회 위원의 자격과 위원장·부위원장의 직무내용, 전문위원의 수 및 자격 등을 규정함

나.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 분과위원회의 수 및 분과별 분장사항과 분과위원회의 회의 소집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다. 합동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7조)

- 합동분과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소위원회의 구성 근거 및 운영 세부

사항 등을 규정함

라.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제12조)

- 위원과 전문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대한 요건을 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생 략

라. 기 타 : 이 전부개정령안은 정부발의한 「국가유산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14506호, 2025. 11. 24. 정부 제출)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화유산위원회 규정 전부개정령안

문화유산위원회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가유산위원회 규정 전부개정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유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국가유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인류학, 사회학, 건축, 도시계획, 민속학, 전통공연예술, 전통공예기술, 동·식물학, 지질학, 지구과학, 조경학, 보존과학, 법학, 경영학, 환경, 관광, 종교, 언론 분야 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서 국가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② 위원은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9조의3에 따른 시·도유산위원회(이하 “시·도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인 사람을 국가유산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3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국가유산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유산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국가유산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의장이 된다.

② 국가유산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지정한 부위원장이 없으면 부위원장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분과위원회의 분장사항)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국가유산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와 그 분장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문화유산분과위원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유산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형문화유산 중 건조물에 관한 사항. 다만, 제8호의 궁능유산분과위원회 분장사항은 제외한다.

2. 동산문화유산분과위원회: 문화유산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형

문화유산 중 건조물을 제외한 유형문화유산에 관한 사항. 다만, 제8호의 궁능유산분과위원회 분장사항은 제외한다.

3. 사적분과위원회: 문화유산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념물에 관한 사항. 다만, 제5호의 근현대문화유산분과위원회 분장사항 및 제8호의 궁능유산분과위원회 분장사항은 제외한다.

4. 매장유산분과위원회: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매장유산에 관한 사항. 다만, 제11호의 동식물유산분과위원회 분장사항 및 제12호의 지질·명승분과위원회 분장사항은 제외한다.

5. 근현대문화유산분과위원회: 문화유산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념물 중 근현대 시설물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에 관한 사항. 다만, 제8호의 궁능유산분과위원회 분장사항은 제외한다.

6. 민속문화유산분과위원회: 문화유산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민속문화유산에 관한 사항

7. 세계유산분과위원회: 법 제31조에 따른 세계유산 및 인류무형유산 등의 등재, 잠정목록 대상의 조사·발굴,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및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에 관한 사항과 이미 등재된 세계유산 및 인류무형유산 등의 유지·관리 및 지원 업무 중 국가유산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8. 궁능유산분과위원회: 궁능유적본부장의 소관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에 관한 사항. 다만 법 제9조제2호가목·나목·라목 및 마목, 같은 조 제5호의 가목 및 나목, 같은 조 제6호, 같은 조 제7호의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심의사항은 제외한다.

9. 전통예능분과위원회: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바목과 같은 호 사목 중 전통예능에 해당하는 무형유산에 관한 사항

10. 전통기술·지식분과위원회: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부터 마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무형유산에 관한 사항. 다만, 사목 중 제9호의 전통예능분과위원회 분장사항은 제외한다.

11. 동식물유산분과위원회: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자연유산에 관한 사항. 다만, 제8호의 궁능유산분과위원회 분장사항은 제외한다.

12. 지질·명승분과위원회: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연유산, 같은 조 제9호의 전통조경에 관한 사항 및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매장유산에 관한 사항. 다만, 제8호의 궁능유산분과위원회 분장사항은 제외한다.

제5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제4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위원 수는 각 분과위원회별로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전문분야

를 고려하여 분과위원회 위원을 지정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겸직하게 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국가유산청장 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개최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가 지정한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한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없으면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⑥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국가유산청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6조(합동분과위원회) ① 법 제9조의2제5항에 따른 합동분과위원회의 회의는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국가유산청장의 요구에 따라 개최하며, 그 의장은 합동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합동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7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분과위원회나 합동분과위원회는 심의사항 등에 관한 전문적·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위원은 분과위원회나 합동분과위원회의 위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나 합동분과위원회의 의장

이 지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사전에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권한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특정안건 또는 법 제9조의 사항에 대한 심의 권한을 위임받은 소위원회의 결정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8조(전문위원) ① 법 제9조의2제9항에 따른 비상근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은 250명 이내로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2.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③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전문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전문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9조(의사정족수) 국가유산위원회, 분과위원회, 합동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회의록의 비공개) 법 제9조의2제8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위원회등의 위원, 제8조에 따른 전문위원 등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재산상의 이익이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법 제9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심의가 진행 중에 있어 해당 사항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조사·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승자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명예보유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단체에 관한 사항(인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이 공개될 경우 재산상의 이익이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개하면 위원회등의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등의 제척·기피 등) ① 위원 또는 전문위원(이하 “위원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등의 조사 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등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등 또는 위원등이 속한 법인(법인의 상근·비상근 임직원을 포함한다)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위원등이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등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등은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등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조사 또는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2조(해촉) 국가유산청장은 위원회등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심신쇠약·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위원회등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된 경우

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따른 문화유산매매업자

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국가유산감리업자

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매장유산 발굴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대표자나 상근 임직원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등으로 적합하지 않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제13조에 따른 윤리강령에 위반한 경우

5. 분과위원회의 개편 등으로 해당 분과위원회가 운영되지 않는 경우

6.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7.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8. 위원이 시·도유산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제13조(윤리강령) 위원회는 위원회등의 위원과 전문위원이 국가유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켜야 할 사항을 국가유산위원회 윤리강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등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등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과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5조제8호에 의한 공능문화유산분과위원회는 제4조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능유산분과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통예능분과위원회 및 같은 조 같은 항제2호·제3호에 따른 전통기술·전통지식분과위원회는 각각 제4조제9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통예능분과위원회 및 전통기술·지식분과위원회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전에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식물유산분과위원회 및 같은 조 같은 항제2호·제3호에 따른 지질·지형유산분과위원회·명승·전통조경분과위원회는 각각 제5조제11호 및 같은 조 제1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동식물유산분과위원회 및 지질·명승분과위원회로 본다.

제3조(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소위원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소위원회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소위원회가 조사·심의한 사항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소위원회가 조사·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4조(윤리강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3조에 따

른 문화유산위원회 윤리강령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 윤리강령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제1호 중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24조의2제2호 중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자연유산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24조의2제1호 중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별표 4 비고 중 “문화유산위원회 규정”을 “국가유산위원회 규정”으로 한다.

②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문화유산위원회·자연유산위원회·무형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③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11조제1호, 제16조제3항, 제21조제4항 및 제34조제2항 중 “위원회”

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하고, 제11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3에 따른 시·도유산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④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9조의3에 따른 시·도유산위원회(이하 “시·도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를 “법 제11조제2항”으로, “사업으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으로, “사업에 대해서는 문화유산위원회 또는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발굴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를 “사업을 말한다”로 한다.

제14조의3 중 “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14조의4제4항제3호 중 “문화유산위원회, 시·도문화유산위원회, 자연유산위원회 또는 시·도자연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 및 시·도유산위원회”로 한다.

별표 2 제2호바목 허가제한사유란 바목 중 “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하고, 같은 호 카목 허가제한사유란 카목 중 “문화유산

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별표 4 제2호마목 위반행위란 마목 중 “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하고, 같은 호 차목 위반행위란 차목 중 “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⑤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제2항 중 “위원회”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15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18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 중 “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31조 중 “시·도무형유산위원회”를 “시·도유산위원회”로 한다.

⑥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제11조제2항, 제4항, 제5항, 제14조제2항, 제4항, 제21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의5제1호, 제37조제2항제1호 및 제38조의3제2항 중 “문화유산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21조의4제1호 중 “문화유산위원회(법 제8조제3항)을 “국가유산위원회(「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2제4항)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21조의5제2호 중 “법 제71조에 따른 시·도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3에 따른 시·도유산위원회”로 한다.

⑦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⑧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의3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의2를 삭제한다.

6.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3에 따른 시·도유산위원회

⑨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제4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제5항, 제22조제4항 및 제30조제1항제1호 중 “자연유산위원회”
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30조제1항제2호 중 “시·도자연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기본
법」 제9조의3에 따른 시·도유산위원회”로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	
연 락 처	(042) 481 - 4769